

2026년 HACCP 사업 설명회

- HACCP 주요 정책방향 -

2026. 2. 10.



목 차

- 1 HACCP 개념 및 인증 현황
- 2 그간 주요 정책 변화
- 3 '26년 주요 추진 정책
- 4 '26년 달라지는 점

1 HACCP 개념 및 인증 현황

- HACCP 개념

HACCP(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)

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

국제식품규격위원회
(Codex) 지침



식품안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**사전예방적** 관리시스템

▶ 정의

식품·축산물의 원료관리, 제조·가공·조리·소분·유통의 모든 과정에서
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
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·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.

(이하 "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")

* (근거 법령) 식품위생법 제48조 ~ 제48조의6,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~제9조의6

● HACCP 개념

▶ 법적 근거 : 식품위생법

식품위생법

- 제48조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)
- 제48조의2(인증 유효기간)
- 제48조의3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 · 평가 등)
- 제48조의4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)
- 제48조의5(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)
- 제48조의6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)

동법 시행령

- 제33조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)
- 제34조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)

동법 시행규칙

- 제62조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)
- 제63조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신청 등)
- 제64조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)
- 제65조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)
- 제66조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·평가)
- 제67조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취소 등)
- 제68조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출입·검사 면제)
- 제68조2(인증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등)
- 제68조의3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)
- 제68조의4(교육훈련기관의 교육내용 및 준수사항 등)
- 제68조의5(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)

● HACCP 개념

▶ 법적 근거 : 축산물 위생관리법

축산물 위생관리법

- 제9조(안전관리인증기준)
- 제9조의2(인증 유효기간)
- 제9조의3(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)
- 제9조의4(인증의 취소 등)
- 제9조의5(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)
- 제9조의6(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등)

동법 시행규칙

- 제7조 (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·운용 등)
- 제7조의2(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)
- 제7조의3(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 신청 등)
- 제7조의4(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)
- 제7조의5(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등)
- 제7조의6(조사·평가의 방법 등)
- 제7조의7(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)
- 제7조의8(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 취소 등)
- 제7조의9(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)
- 제7조의10(교육훈련기관의 교육 내용 및 준수사항 등)
- 제7조의11(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)

● HACCP 인증 현황

☑️ 식품 : **11,319**개소 인증 ('25.12.31.기준)



[식품 전체 인증현황]

: (업체) **11,319** 개소 (유형) **23,607** 건
[의무적용]

: (업체) **7,400** 개소 (유형) **10,897** 건
[자율적용]

: (업체) **6,459** 개소 (유형) **12,710** 건



● HACCP 인증 현황

✓ 축산물 : **17,442**개소 인증('25.12.31.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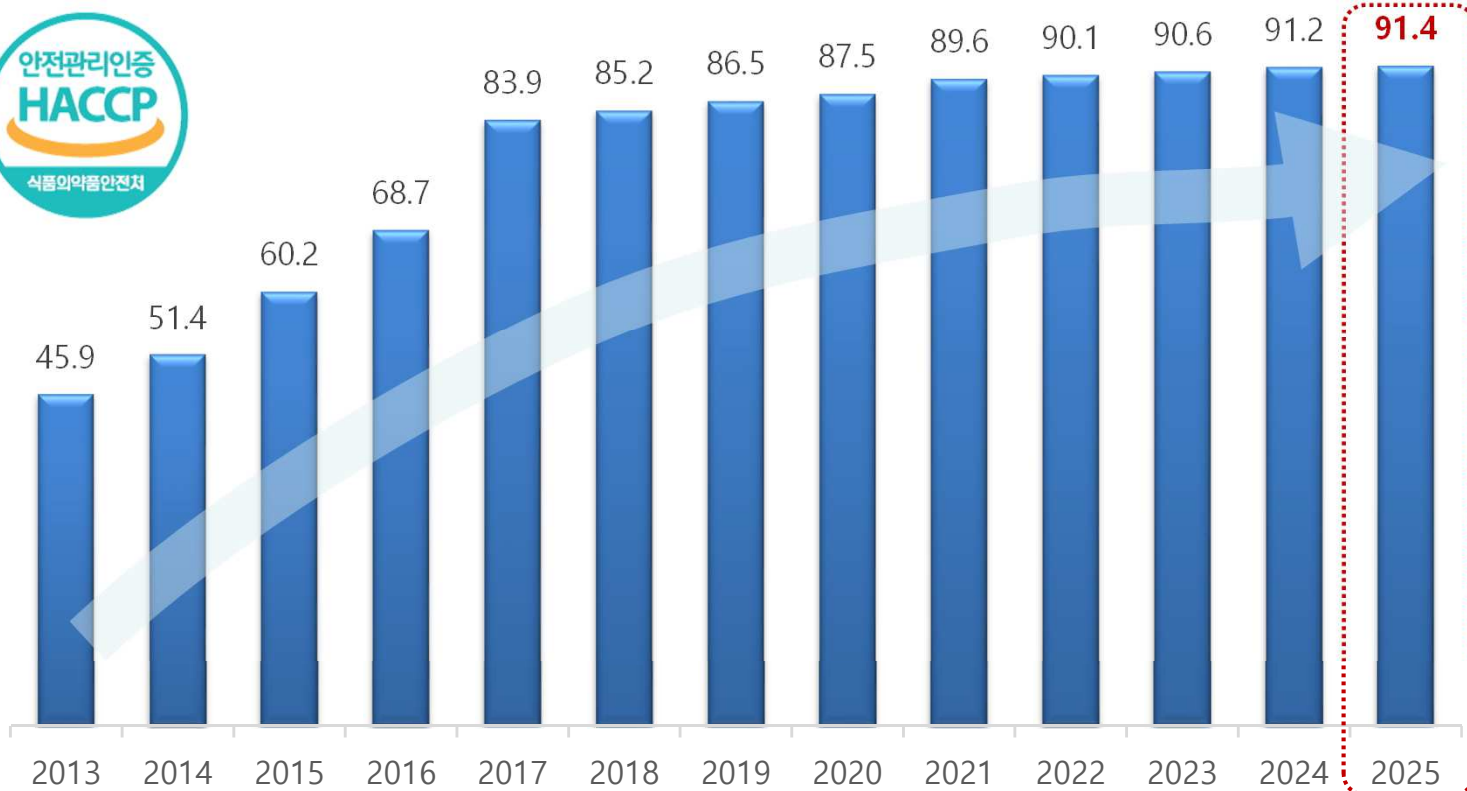


[축산물 가공분야] : **8,253**개소
 [축산물 유통 및 식용란선별포장업] : **2,463** 개소
 [도축·집유업] : **188** 개소
 [농장] : **6,272** 개소
 [사료] : **266** 개소



● HACCP 인증 현황

식품 및 축산물 HACCP 인증제품(가공) 생산량 **91.4%** ('25.12.31. 기준)



- HACCP 운영 성과

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제도 확립 및 체계적 발전

일반 위생 관리

- 제한적 위생 관리
 - 기본 법규 중심
 - 유통기한, 청결, 개인위생 등
- 수동적, 비효율적 식품안전 관리
 - 식품안전 사고 후 수습 중심 업무

식품안전 관리 체계화

- 식품안전 관리 절차 시스템화
 - 법규 관리 + 식품안전 위해 관리
 - 선행요건 및 HACCP Plan 수립
 - 시스템 검증 및 문서화 구축
- 능동적 식품안전 관리
 - 선제적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
 - 잠재적 위해 분석 및 CCP 관리
- 식품안전 인식 및 역량 강화
 - 식품안전 및 HACCP 교육

IoT 활용 식품안전 고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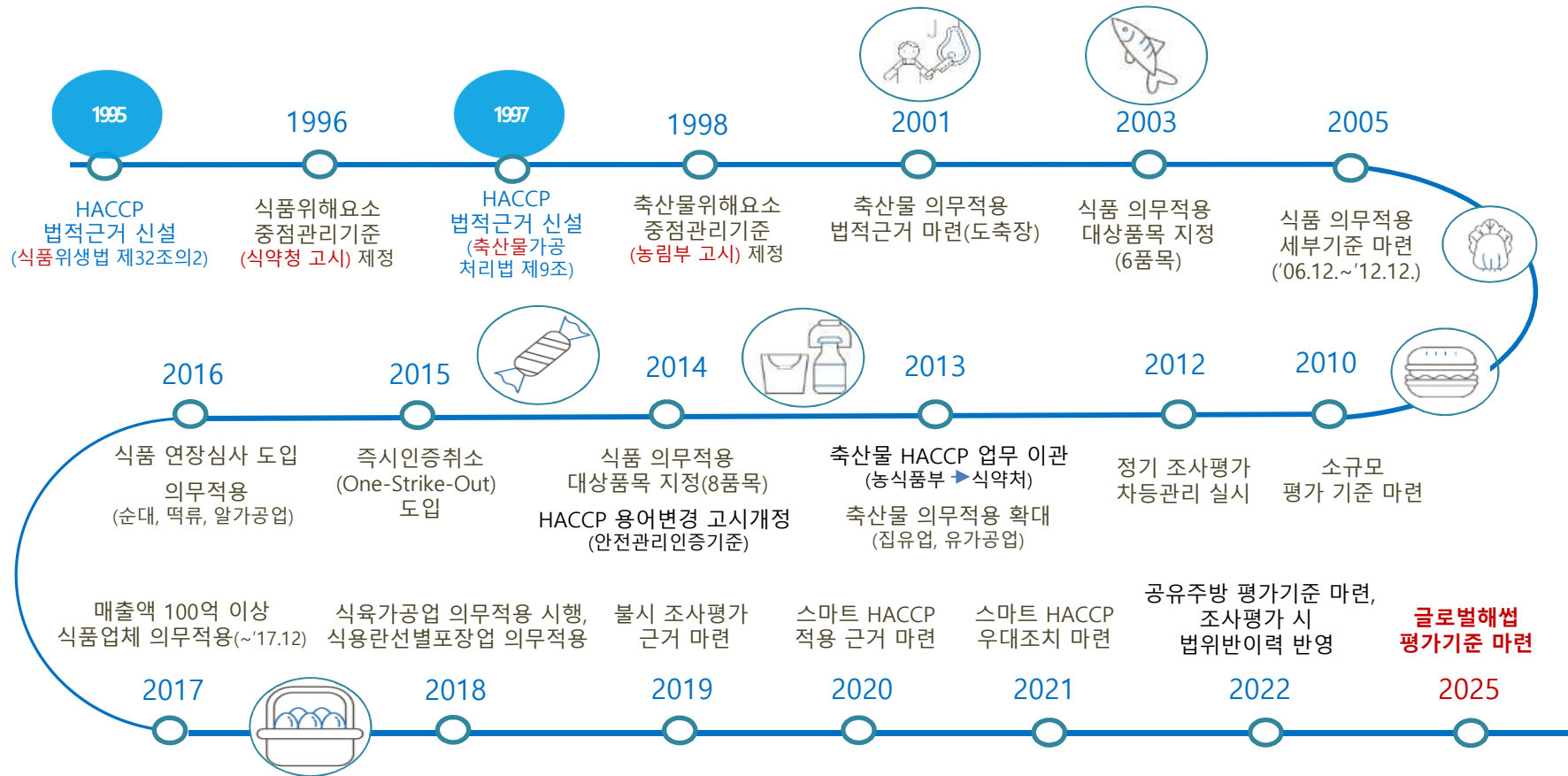
- 식품안전 관리 신뢰도 향상
 - 실시간 CCP 모니터링 및 기록
 - 식품안전 투명성 및 정확도 향상 (데이터 위변조 불가)
- 신속한 사고 대응 가능
 - CCP 이탈 시 알람 및 즉시 개선
 - 원격 제어 및 위해 수준 판단 대응
- 현장 업무 효율화
 - IoT 활용 모니터링, 기록 자동화
 - Paper free(불필요한 서류 미보관)
- 식품안전 예측 관리
 - 빅데이터 분석 맞춤형 계획 수립

➔ HACCP('95년 도입)은 명실 상부한 「식품안전관리시스템」

2 그간 주요 정책 변화

● 그간 주요 정책 변화

▶ HACCP 제도 연혁



● 그간 주요 정책 변화(의무화)

▶ 식품 HACCP 의무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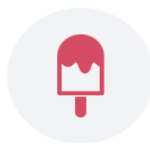
완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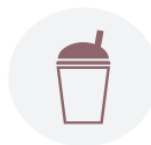
어묵



냉동수산식품
(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)



빙과류



비기열음료



냉동식품
(피자류만두류면류)



레토르트식품

~ '12.12.
의무적용 완료



배추김치

~ '14.12.
의무적용 완료



즉석조리식품(순대)

~ '17.12.
의무적용 완료



매출액 100억 이상

~ '17.12.
의무적용 완료



어육소시지



음료류



초콜릿류



특수용도식품



과자캔디류



빵류떡류



국수유탕면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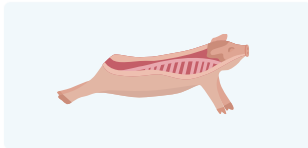
즉석섭취식품

~ '20.12.
의무적용 완료

● 그간 주요 정책 변화(의무화)

▶ 축산물 HACCP 의무적용

! 식육포장처리업 의무적용 진행중



도축업

'02.6. ~ '03.6. 의무적용 완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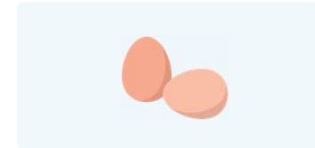
집유업

'14.7. ~ '16.1. 의무적용 완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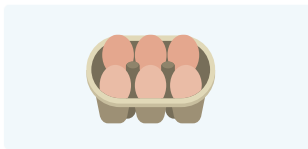
유가공업

'15.1. ~ '18.1. 의무적용 완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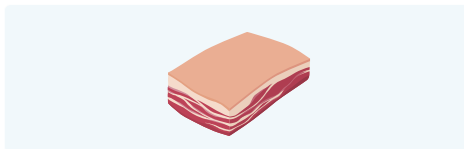
알가공업

'16.12. ~ '17.12. 의무적용 완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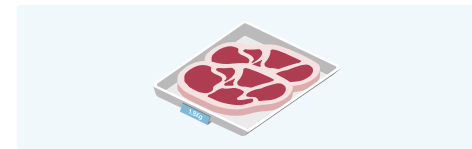
식용란선별포장업

~ '18.4. 의무적용 완료



식육가공업

'18.12. ~ '24.12. 의무적용 완료



식육포장처리업

'23.1. ~ '29.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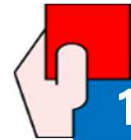
1단계 : '20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업소('23.1. 시행)

2단계 : '20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업소('25.1. 시행)

3단계 : '20년 매출액 1억원 이상인 업소('27.1. 시행)

4단계 : 1~3단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('29.1. 시행)

● 그간 주요 정책 변화(내실화)



1. 즉시 인증취소(One-strike Out) 규정 시행('15년)

★ 조사·평가 시, 주요 안전조항 1개 이상 위반 또는 평가점수 60점 미만일 경우



※ 지하수 살균·소독 미흡 시 즉시인증취소는 식품 HACCP에만 적용

● 그간 주요 정책 변화(내실화)

2. HACCP 인증업소에 대한 불시 조사·평가('18년)

★ (수시 조사·평가) 축산물 HACCP 업체 불시평가 근거 마련 (2018.4.25) [식약처 고시 제 2018-31호]
⇒ 「식품위생법」 또는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 대상 불시 조사·평가 실시

★ (정기 조사·평가) 사후관리 대상 전면 불시평가 전환 (2019.3.4) [식약처 고시 제 2019-12호]
⇒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 15조(조사평가의 범위와 주기 등)

-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,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 조사·평가 대상업소(농장은 제외한다)와 「식품위생법」 또는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불시에 조사·평가를 실시하고,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또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.

☑ 법 위반사항 외의 정기 조사·평가 대상까지 확대하여 불시 평가하도록 개정

● 그간 주요 정책 변화(내실화)

3. 주요 안전조항 위반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 강화('19년)

★ [인증(연장) 심사] 주요 위생안전조항 감점 시 ⇒ 평가결과 <보완> 판정

* 지적사항 개선조치 확인 완료시 <적합> 판정

주요 안전조항 문항 지적사항 발생 시	선행, HACCP 분야별 합계점수	개정 전	개정 후
0점	관계없음	부적합	좌 동
부분점수 취득	85%이상	적 합	보 완
	70%이상 ~ 85%미만	보 완	좌 동
	70%미만	부적합	좌 동

주요 안전조항

- ✓ 원·부재료 검수 미흡
- ✓ 지하수 살균·소독 미흡
- ✓ 작업장 세척·소독 미흡
- ✓ 중요관리점 공정관리 미흡
- ✓ 위해요소분석 미 실시

● 그간 주요 정책 변화(내실화)

4. 감점 제도 도입('19년, '22년)

★ 2배 감점 제도 도입('19.12.)

- 전년도 해썹 조사·평가의 **개선조치 요구를 미이행**한 경우,
해당 항목 감점 점수의 2배를 감점

★ 법위반 감점 제도 도입('22.5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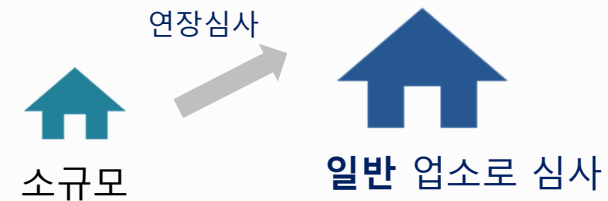
- 전년도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**위반**(행정처분일 기준)
업체에 대해 해썹 조사·평가 시 **관련 선행요건관리 항목 감점**

* (예시) '25년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 받은 업체는 '26년 해썹 현장평가 시 관련 항목 1점 감점

● 그간 주요 정책 변화(제도적 지원)

1. HACCP 연장심사 유예(소규모→일반 전환)

- ★ **유예대상** : HACCP 연장심사 대상 업체 중 "소규모 → 일반" 전환업체
 - ★ **유예기간** : 신청서 및 **현장확인**을 실시하여 **1년 범위** 내에서 연장심사 시기 유예
 - ★ **적용범위** : HACCP 적용을 위해 **시설·설비 개·보수**를 위하여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경우
- ※ 연장심사 만료일 이전에 처리 완료 필요



● 그간 주요 정책 변화(제도적 지원)

2.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 유예

★ 유예대상 :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식품제조·가공업체

※ 식품제조·가공업 97억 + 유통전문판매업 4억으로 도합 100억원이 넘는 경우

→ 100억 의무 아님(식품제조·가공업 전년도 매출액으로만 판정)

★ 유예기간 :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 시기를 유예

★ 적용범위

-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되어 당해연도 신규 의무적용 대상이 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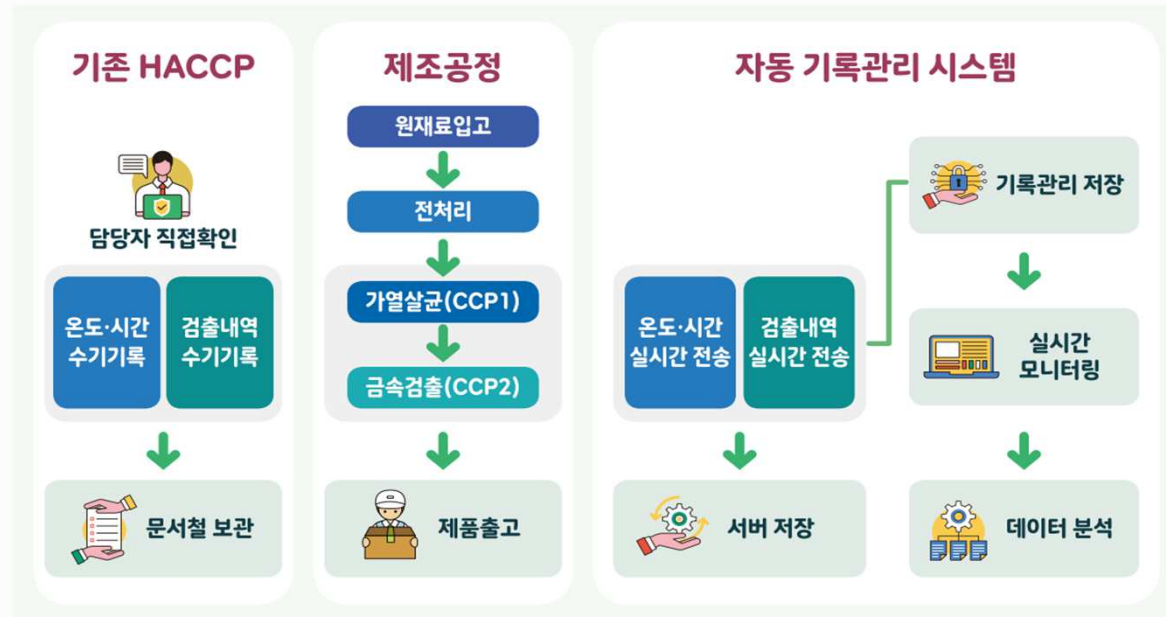
※ 생산실적보고 완료일 이전에 요청

- 기존 100억 의무적용 업소는 신규로 식품유형 추가하는 경우

- 그간 주요 정책 변화(제도적 지원)

3. 스마트 HACCP 우대조치 확대

☑ 스마트해썹 : 중요관리점(CCP)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·관리 및 확인·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의 위·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



- **그간 주요 정책 변화(제도적 지원)**

3. 스마트 HACCP 우대조치 확대

스마트 해섫 중요관리점 60% 이상 등록업체 현장평가 면제(자체평가 전환)

연장심사 해섫 관리 가점 부여

* (일반) 100% 6점 / 60% 이상 3점 / 60% 미만 1점

** (소규모) 100% 3점 / 60% 이상 2점 / 60% 미만 1점

스마트 해섫 중요관리점 60% 이상 등록업체 스마트 해섫 심벌 사용 가능

3 '26년 주요 추진 정책

'26년 주요 추진 정책

1. 글로벌 해썹(Global HACCP)

도입 배경

내.외부 작업자로 인한
식품 테러 등 의도적 오염

식품방어 위협요소

- 냉동식품 농약 테러('13)
- 딸기 바늘 사태('18)
- 맥주 소변 방뇨('23)

FOOD DEFENSE
(식품 방어)

전쟁, 테러, 이상기후로
식품 원료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
경제적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
가짜식품, 원료 대체

식품사기 취약요소

- 멜라민 함유 분유 유통('07)
- 소고기 가공품, 말고기 혼합('13)
- 아보카드유, 다른 기름 혼입('23)

FOOD FRAUD PREVENTION
(식품 사기 예방)

내부고발, 소통 미흡
경영진 책임과 헌신 강조
식품안전문화 중요성 강조

- 내부고발, 사회적 이슈

FOOD SAFETY CULTURE
(식품안전문화)

● '26년 주요 추진 정책

1. 글로벌 해썹(Global HACCP)

✍ 정의 및 개념

해썹 업소가 고의적·의도적인 식품안전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현재 해썹 기준에 '식품방어', '식품사기 예방', '식품안전문화' 및 '식품안전 경영' 등을 포함하여 관리하는 시스템

식품 방어 (Food Defense)	식품사기예방 (Food Fraud Prevention)	식품안전문화 (Food Safety Culture)	식품안전경영 (Food Safety Management)
<p>의도적인 위해, 테러 등으로 인한 식품 오염 및 위험요소 방지 활동</p>	<p>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의도적인 위조, 가짜원료 대체 등 취약 요소 방지 활동</p>	<p>종사자 등 조직 전반에 식품안전 관련 사고방식과 행동에 미치는 가치, 신념 및 규범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활동</p>	<p>식품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과정에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 활동</p>
			

'26년 주요 추진 정책

1. 글로벌 해썹(Global HACCP)

✍ 평가 항목

現 HACCP 법정 의무(유형별, 업종별)	
총 80개 평가항목	
선행 (52)	▲영업장 ▲위생 ▲시설·설비 관리, ▲용수 관리 ▲보관·운송 ▲검사·관리 ▲회수프로그램 관리 등
해썹 (28)	▲제품설명서 및 공정 흐름도 ▲위해요소분석 ▲CCP 결정 및 한계기준 ▲CCP 모니터링 등

+

글로벌 해썹 자율적용(등록)	
총 152개 평가항목	
※ 現 HACCP 기준(80개 항목) + 글로벌 해썹 기준(72개 항목)	
선행 (+16)	▲식품 방어·사기 요인 관리 ▲품질관리 ▲제품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 ▲환경점검 관리 ▲비상 대응 관리
해썹 (+56)	▲글로벌 해썹팀 구성·교육 ▲글로벌 해썹 관리 전략 ▲식품안전경영 ▲식품안전문화

✍ (등록 현황) **18개 업소 67개 품목**(’26.1.31. 기준)

- 식품제조업 12개소, 축산물가공업 3개소, 건강기능식품제조업 3개소 등 전 제조업종 등록 중

● '26년 주요 추진 정책

2.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

☞ 추진배경

국내외 식품분야 안전관리인증 규격인 HACCP과 GFSI 인증규격을 유사 수준으로 중복 운영·관리하는 **업계의 부담 완화** 및 **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계 마련**

민간인증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통합적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의 효과,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
부처 협업 규제샌드박스 시범 사업 2차년도 시행('26.1~)

☞ 사업특혜

- 1 「식품위생법」 제48조 제8항 및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의 3에 따른 **정기 조사·평가 면제**
(단, 법 위반 또는 조사·평가 부적합 업체 등은 면제 불가)
- 2 HACCP 기준 준수 여부를 **자체평가 실시**하여 개선·보완 → 단, **자체평가 결과 제출은 면제**

'26년 주요 추진 정책

2.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

☑ 운영체계

- (참여기관) HACCP 인증업체에 대한 GFSI 인증·사후관리 실시 및 그 결과 식약처장에게 보고
 - * 참여기관(6개): DNV, SGS, 뷰로베리타스, 한국품질재단, BSI, NSF
- (식약처) HACCP 사후관리 및 참여기관의 가이드라인 준수여부, 운영현황 등 점검·관리
- (지방식약청) 법 위반, 사후관리 부적합 업체에 대한 불시 조사·평가
- (식품 관련 협회) 시범사업 운영 모니터링 및 역량 검증 시 참관



● '26년 주요 추진 정책

3. 식품안전 특화 교육

☑ 반복 법 위반 HACCP 인증업체 대상 교육·훈련* 시행('25.5월~)

- HACCP 인증업체의 관리미흡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올바른 해썹 운영·관리, 식품 관련 법령, 식품 안전문화 개선 등 총 5시간 교육 실시

* 근거 : 『식품위생법』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제3호, 『축산물 위생관리법』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제2호
→ 식약처장이 식품·축산물 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어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명하는 교육·훈련

- 연 2회 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체 및 재인증 후 당해연도 법 위반한 업체 대상!

매 분기별 1회, 총 연 4회 시행
2026년 1분기 특화 교육은 3.31.(화) 예정!

'26년 주요 추진 정책

3. 식품안전 특화 교육

- ✓ **교육기관**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- ✓ **교육방법** **집합교육** (필요 시 온라인 교육 개설), **5시간** (수수료 10만원)
- ✓ **교육횟수** 연 4회 (분기별)
*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표 누리집(fresh.haccp.or.kr) ▶ 교육 ▶ 식품안전 특화 교육
- ✓ **교육대상** **영업자 또는 HACCP 팀장**

연 2회 이상
행정처분 받은 업체

재인증* 후 당해연도
법 위반한 업체

*조사평가시 인증취소 후 재인증

★교육 명령 받은 업체는 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 수료
* 1차 교육 명령 미이행에 따른 2차 교육명령은 3개월 이내 교육 수료

✓ 교육내용

<p>HACCP 관리 (1.5시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HACCP의 필요성과 이점 • 올바른 선행요건·HACCP의 이해 • HACCP 운영 위한 영업자의 역할과 의지 	<p>식품위생법/ 축산물 위생관리법 (2시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위반 사례 분석 및 영업자 준수사항 • 식품 등 표시기준 및 이물 관리 	<p>식품안전문화 (1.5시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식품안전문화의 개념·이해 • 식품사고로 알아보는 식품안전문화 사례, 정착 방안 등
--	--	---

✓ 행정처분

미 이행시 1차 시정명령, 2차 시정명령 진행.
2차 시정명령에도 미이수시 HACCP 인증취소 처분

* 처분 근거: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0,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의 2

4 '26년 달라지는 점

● '26년 달라지는 점

1. 연장심사 신뢰성 제고를 위한 불시 심사 실시('26.2월~)

~25년

✍️ 심사일정 사전 통지 후 유효기간 연장(현장) 심사 실시

* 「행정조사기본법, 제17조제1항」

26년~

★연장심사 신뢰성 및 실효성 확보★

✍️ 민원처리기한(60일) 이내 불시에 현장심사 할 수 있도록 연장심사 방법 개선

- 「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」(식약처 고시) 제11조제2항 신설

: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HACCP 적용업소의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
현장조사를 민원처리기한 내에 불시에 실시할 수 있다.

* 「행정조사기본법, 제17조제1항1호」

: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조사 개시와 동시에 행정조사 목적을 구두로 통지 가능

● '26년 달라지는 점

2. 배추김치 소독공정 운영 시 혜택 부여('26.2월~)

~25년

☞ 김치, 즉석섭취식품, 비가열 신선편의식품은 전년도 조사평가 점수가 우수·양호해도 차등관리에 해당 안됨 → **무조건 매년 현장평가 실시**

* 「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」(식약처 고시) 제15조

26년~

★관리가 우수한 업체에 대한 제도적 차별성 부여★

☞ **배추김치**의 식중독균 등 위해요소 제어를 위해 **배추 등 원·부재료 소독공정**을 **중요관리점(CCP)**으로 운영하는 경우, 전년도 조사·평가 우수·양호한 업체는 **현장평가 면제**(자체평가 실시)

- 「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」(식약처 고시) **제15조제5항제6호 신설**

* 행정예고(공고 제2026-021호, '26.1.15.~2.4.)

● '26년 달라지는 점

3. 도축장·집유장에 대한 스마트해썹 적용 확대('26년 상반기~)

~25년

✍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축산물 생산단계 업종(도축장, 집유장)은 스마트해썹 등록 및 적용 불가

* 「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」(식약처 고시) 제11조의2

26년~

★식품 전 주기에 대한 디지털 관리 기반 마련★



✍ 도축장 및 집유장이 스마트해썹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, 시·도지사에게 신청

→ 시·도지사는 평가 결과 적합한 경우 HACCP 확인서에 해당사항 기재·발급

→ 스마트해썹 등록 도축장 및 집유장은 심벌 사용 가능

- 「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」(식약처 고시) 제11조의2 및 제16조 등 개정

* 고시개정 절차 진행 중

● '26년 달라지는 점

4. 스마트해쌈 구축 지원 사업 실시('26.2월~)

☑ 사업 개요

- (목적) 소규모 해쌈 인증업체의 식품안전관리 효율성 및 신뢰도 향상
- (기간) 2026년 2월~12월
- (대상) 소규모 해쌈 인증(예정) 업체 중 스마트해쌈 도입 희망 업체 **50개소**
- (대상 선정) 지방자치단체 주관 공모 절차 등에 의해 선정



☑ 지원 금액

- (총사업비) 총 10억원(국비 30%, 지방비 30%, 자부담 40%)
- (업체당 지원금액) 스마트 해쌈 구축 비용 **최대 2천만원의 60% 지원**

즉, 구축비용 최대 2천만원 중 **1,200만원 지원!**

- '26년 달라지는 점

4. 스마트해썹 구축 지원 사업 실시('26.2월~)

☑ 시도별 사업량

(단위: 백만원)

연번	시·도	지원개소	예산(국비)	연번	시·도	지원개소	예산(국비)
1	대구	3	18	7	충남	2	12
2	인천	2	12	8	전남	1	6
3	대전	2	12	9	경북	12	72
4	경기	12	72	10	경남	12	72
5	강원	1	6	11	제주	1	6
6	충북	2	12	총계		50	300



감사합니다!

